

고 시

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5-8호

별정우체국법 제15조, 동법 시행령 제6조, 제7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취소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14일
전남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

○ 지정취소내역

별 정 우체국명	총 괄 우체국명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취소 사유
도 곡	화 순	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1126	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상실

○ 지정취소일 : 2025. 10. 31.자